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-1063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는 바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,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1월 30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(인)

1. **지정취지**

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의 시행(2018.012.31.)에 따라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 및 「영유아보호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도시 안전 광진을 만들고자 함

2. **지정일자 :** 2018. 12. 31.(월)

3. **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**

  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 및 「영유아보호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

   ※ 해당 시설의 향후 설치/폐지(설립/폐쇄) 시 금연구역 자동 지정 및 해제

4. **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**

   과태료 부과 금액 : 10만원

   - 감경 : 5만원(의료급여수급자, 장애인, 미성년자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)

5. **행정예고 기간 :** 2018. 11. 30.(금) ~ 2018. 12. 20.(21일간)

6. **의견제출 기간 :** 2018. 11. 30.(금) ~ 2018. 12. 20.(21일간)

7. 공고방법 :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

8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(2018. 11. 30.(금) ~ 2018. 12. 20.(21일간))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[붙임2]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(공고)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성 명(기관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2-3425-1776)

라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(자양동)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(☎02-450-1924).